

의안번호	제33호
의결연월일	2017. 6. 8.

#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8일,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
## 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건강도시지원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)
  -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
  -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
  -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
  -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  - 건강도시 홍보사업
  -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협의회 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4조~안 제9조)
  - 협의회 구성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
  - 회원도시 수 : 87개 지자체( '17. 4월 현재)
  
- 임원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~안 제13조)
  - 임원 : 의장도시, 부의장도시, 감사도시
  - 임기 : 2년, 한 차례만 연임
  -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
  
- 총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~안 제17조)
  -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
  -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,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함
  
- 운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~안 제22조)
  
-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3조)
  
-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4조~안 제29조)
  - 연회비 : 광역 3백만원, 기초 2백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